

## 23. 相續稅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862號 1995. 12. 30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의 제목“(공익사업)”을“(공익사업등)”으로 한다.

제3조의 2 제2항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동항 제8호 중 “공중위생”을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로 하며, 동항 제11호 중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의료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 2 제5항 본문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호”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중 “주민세”를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 “금액의”를 “금액(제17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금액을 제외한다)의”로, “말일”을 “종료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제외한다.

다.

제3조의 2 제7항 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5호중 “유사한”을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하며, 동항 제8호 중 “6월”을 “6월(제4항 본문 단서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의 2 제8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 2 제9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중 “유사한”을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한다.

2. 제7항 제2호 또는 제1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산 재산가액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times$   $\frac{\text{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금액}}{\text{사용기준금액}}$

제3조의 2 제13항 제1호 중 “신고기한”을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

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등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 2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출연재산매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받은 재산(매각하는 출연재산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 중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을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하며, 동항 제7호 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

제5조 제2항 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본문중 “편”을 “가액”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한다.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 (2)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  
한 경우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  
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  
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  
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

$$1\text{주당 가액} = \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  
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  
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  
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text{주당가액} = \left( \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right.$$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 2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을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  
되, 동항 전단중 “나목”을 “다목”으로,  
“이 영이 정하는 바에”를 “법 제9조의 규  
정에”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인세법 제  
17조 제10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을 아목으로 하  
되, 동항중 “비상장법인”을 “법인(상장법  
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을 “그 다른 법인”으로,  
“나의”를 “다목의”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 본문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항(4)중 “법인세액”을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중 “나목”을 “다  
목”으로 하고, 동항 사목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한다.

제5조 제6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  
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  
사채는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  
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

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를 적용한다.

제6조 제2항 중 “대주가”를 “임대인이”로, “대주가 취득할”을 “임대인이 받을”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119조 제1항 각호”를 “제107조 제1항 각호”로 한다.

제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군·구와 서로 연결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결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제8조의 3 제3항 제2호 중 “시·구·읍·면”을 “시·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상속세비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외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중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5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9조의 2 제2항 중 “100원에 일변 4전”을 “1일 1만분의 4의 율”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때에는”을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연부연납금액의 결정)”을 “(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제1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제기하는 사업”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 2 중 “1일 3전으로”를 “1일 1만분의 3의 율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

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 수납가액=

$$\frac{\text{구주식 1주당 상속세과세가액}}{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frac{\text{구주식1주당 상속세과세가액} + \text{신주 1주당 주권납입금액} \times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 + \text{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  
납가액으로 한다.

제3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  
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  
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  
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  
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 6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  
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

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규  
정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50제곱  
미터”를 “85제곱미터”로, “4배”를 “5배”  
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  
용례) 제3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  
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17항 제1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  
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2호·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⑤(물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  
행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회분의 분  
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 이내에 도래하

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 ◇개정이유◇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50퍼센트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할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만 사용하면 증여세를 추가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에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 2 제17항 제1호).

다. 상속·증여세를 상속·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환매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순서로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영 제30조 제2항).

라. 현재는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지원함(영 제42조 제2항).  
〈법제처 제공〉